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5. 11 선고 2022가단1134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
담당변호사 신지영
변 론 종 결 2023. 2. 9.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대하여 2021. 12. 22. 체결된 재산분할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22. 1. 19. 접수 제6976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1. 7. 15. C에게 30,000,000원을 약정 이자 연 12.9%, 매월 8일 60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연체 이자 연 15.9%의 조건으로 대출해 주었는데, C은 2022. 2. 8.부터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연체하였다.

나. 피고와 C은 2018. 3. 1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는데, 피고가 2021. 11. 5. C을 상대로 ‘C의 알코올 의존증, 늦은 귀가, 도박 중독, 가산 탕진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 위자료, 명의신탁 해지(재산분할)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1드단104565), 2021. 12.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아래 2항, 3항 기재 사항을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

1. 피고와 C은 이혼한다.
2. 피고는 C에게 재산분할로 50,000,000원을 2022. 1. 31.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C은 피고로부터 위 2.항 기재 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한다.
4. 원고와 피고의 적극 및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한다.
5.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6.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다. 피고는 2021. 12. 22.부터 2022. 1. 14.까지 C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C은 2022.

1.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1. 12. 22.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재산분할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 전 원고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위 대출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이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증거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C 사이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C이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지분을 이전받아 이를 소유하는 것이 과대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와 C은 2017. 10. 14.경 D,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8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매도인(D)에게 C 계좌로 계약금 1,000,000원, 2017. 10. 16. 나머지 계약금 9,000,000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7. 11. 25. 매도인에게 중도금 10,000,000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17. 11. 28. 매도인에게 145,000,000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7. 12. 16. 매도인에게 나머지 20,000,000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취득세로 8,525,400원을 피고 계좌로 지급하였다. 피고와 C이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무렵까지 C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은 2017. 3. 16.부터 2017. 12. 8.까지 합계 11,258,769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의 대부분은 피고가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② C이 2017. 3. 16.부터 2021. 9. 7.까지 피고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돈은 합계 95,478,769원이고, 피고가 2017. 12. 8.부터 2021. 10. 22.까지 C에게 송금한 돈은 64,365,620원인데, 피고가 송금한 돈 중 50,251,000원은 C의 도박으로 발생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다.

③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써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와 C이 이혼에 이르게 된 계기는 C이 피고 모르게 도박 등으로 거액의 대출채무를 발생시키는 등 무절제한 금전거래관계에 따른

실패상실이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와 C 간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C에게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피고는 C에게 위자료를 포기하는 대신 C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지분을 이전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희

별지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군포시 [도로명주소] 경기도 군포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43.7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군포시

대 530.3㎡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530.3분의 12.127

